

---

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728호)

# 제 안 설 명 서

---

2020. 11. 24.

서울혁신기획관

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.

의안번호 제1728호 「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

- 혁신인재 양성 외 서울혁신파크의 여러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
- 서울혁신파크의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대상 등을 규정하여 서울혁신파크의 시민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

- 안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이 서울혁신파크의 기능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8조의2에서 서울혁신파크의 부대시설인 대관·연수 시설, 부설주차장의 이용료를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고,
- 안 제8조의3에서 이용료의 감면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서울혁신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 
감안하셔서,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0. 11. 24.

서울혁신기획관 정 선 애